
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6. 4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년 1월 22일, 정부

나. 회부일자: 2026년 1월 2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32회 국회(임시회)

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6.2.25.) 상정, 제안설명,
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부

제433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3.10.) 상정, 축조심사,
의결(수정가결)

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6.3.11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
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정부)

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, 발
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
결과의 통지기간을 「행정기본법」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
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: 강대훈)

기존 시행령에 규정하던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, 신청기
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「행정기본법」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
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
타당해 보임.

다만,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 제5조의4는 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대
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
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, 부담금이 강제적 금전납부
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간에 관한 근
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는 것이 적절할 것임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)

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이의신청 기간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지를 받은 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수정함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.

7. 심사결과

수정가결

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체계·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.

※ 심사보고서 붙임서류
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3.

제안자 :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이의신청 기간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이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.
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제6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3조(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) ① ~ ⑤ (생략)	제13조(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	제13조(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) ① ~ ⑤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⑥ <u>발전용원자로운 영자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u>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설></u>	⑦ <u>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	⑦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</u>

<u><신 설></u>	<u>⑧ 제6항 및 제7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 정기본법」 제36조 에 따른다.</u>	<u>다.</u> ⑧ (개정안과 같음)
<u>⑥ (생 략)</u>	<u>⑨ (현행 제6항과 같음)</u>	⑨ (개정안과 같음)
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
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
정보통신부장관이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명
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) ① ~ ⑤ (생 략)	제13조(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) ① ~ ⑤ (현행과 같 음)
<u><신 설></u>	<u>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</u>
<u>⑥ (생 략)</u>	<u>⑨ (현행 제6항과 같음)</u>